

1. 住宅建設促進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375號 1991. 5. 28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

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현재는 농어민이 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농어민에게 부담을 주는 동시에 정부의 농업구조조정시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원활한 농업구조조정시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